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㊐04427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****/전송(02)790-8911
보험국 국장 김기성 [6574]/ 보험정책팀장 손용석 [6571]/ 팀원 문성현 [6580]/ E-mail:kma2010@daum.net

문서번호 대의협 제821-11297호

시행일자 2018. 1. 19.

수 신 각 시도의사회장, 각 학회장, 각과 개원의협의회장

참 조

제 목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개정 관련 안내

1. 관련근거 : 국민건강보험공단, 요양기준부(2018.1.16.)

2.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급여비용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개정사항에 대해 안내를 요청하였는바, 이를 알려 드리오니 귀 회 소속 회원님들께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[주요개정 내용]

◦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

| 구분 | | 의료법에 따른 의료기관 (보건의료원 포함) |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|
|---|---|---|---|
| 의사소견서 (1회당) | 일반 | 35,570원 | 22,200원 |
| | 치매진단관련양식 (5등급, 인지지원등급) | 50,000원 | 40,130원 |
| 방문간호지시서 (1회당) | 대상자가 방문 | 18,920원 | 5,030원 |
| | 의사가 방문 | 59,640원 | 10,850원 |

◦ 촉탁의 진찰비용 산정기준

- 초진비용 : 15,310원, 재진비용 : 10,950원
- 촉탁의 1인당 월 최대 150명까지, 촉탁의 소속 의료기관당 월 최대 300명까지 진찰 비용 산정 가능

◦ 시행일 : 2018. 1. 1.

◦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 게시

- 제도소개 / 급여기준 및 수가 / 급여기준조회
- 알림 자료실 / 자료실 / 법령자료실

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